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63

발의연월일: 2020. 10. 8.

발 의 자 : 윤영덕 · 김승원 · 김주영

인재근 • 이용빈 • 기동민

조오섭 · 송갑석 · 이병훈

강민정 · 양향자 · 강은미

이형석 • 민형배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조사하고 발굴·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고구려역사문화권, 백제역사문화권, 신라역사문화권, 가야역사문화권, 마한역사문화권, 탐라역사문화권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마한역사문화권을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남 일 대 마한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여 정의 하고 있음.

그러나 고대 광주와 전남 모두 마한문화권에 속했고 광주와 전남의 구분은 현행 지방행정체계의 구분으로 광주 지역에 마한 시대의 유적 ·유물이 상당수 분포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마한역사문화권에 서 광주는 제외되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마한역사문화권의 범위에 광주를 포함하여 광주와 전남 일대에 분포한 마한 시대의 유적·유물에 대한 체계적 정비를 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마목 신설). 법률 제 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7412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전남"을 "광주, 전남"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7412호 역사문화권 정비	법률 제17412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문화권"이란 역사적으	1
로 중요한 유형・무형 유산	
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해 고	
유한 정체성을 형성·발전시	
켜 온 권역으로 현재 문헌기	
록과 유적・유물을 통해 밝	
혀진 다음 각 목의 권역을	
말한다.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마한역사문화권: 영산강	마
유역을 중심으로 <u>전남</u> 일	<u>광주, 전</u>
대 마한 시대의 유적・유	남
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